|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  **수출대금 경외예치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 2010년 8월 27일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업의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를 일층 더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북경, 광동(심천 포함), 산동(칭다오 포함), 강소 4개 지역에서 수출대금 경외예치 정책을 시범하기로 결정하고 시범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제 시범과 관련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범지역에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할 의사가 있고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내기업이 있는 경우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시범에 참가할 수 있다.  2. 시범지역의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이나 외환관리부(이하 시범분국이라 함)는 《화물무역 수출대금 경외예치 관리 시범방법》(이하 《시범방법》이라 함. 별첨 참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하고 당지의 실정과 관할 기업들의 신청 상황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시범기업의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범기간에 매 시범분국이 확정한 시범기업의 총수는 10개 기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시범기업은 《시범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외구좌의 개설과 말소, 자금수지 등 업무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환국은 《시범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범기업 경외구좌 수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주체별로 업무대장을 건립하여야 한다.  5. 시범기업이 경외에 예치한 수출대금 연도총액은 그 전연도 수출대금 총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비율은 시범분국이 《시범방법》의 관련규정과 기업의 실정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조정한다.  6. 외환국은 시범기업이 보고한 정보에 근거하여 시범기업의 수출 외환대금의 상계, 수입 외환지불의 상계(수입 외환지불총액 확인) 등 외환 관련수속을 처리한다. 시범기업이 수출 외환대금을 상계한 후에 규정에 따라 정상적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한다.  7. 시범분국은 《시범방법》과 이 통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시범운행절차를 제정하여 업무운행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범운행절차는 2010년 9월 20일 전에 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8. 시범분국은 수출대금 경외예치 시범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분국 부국장이 책임자로 하는 업무 팀을 구성하고 총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구체적인 시범활동방안을 제정하여 진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9. 시범분국은 관할 분지기구와 시범기업에 대한 업무훈련을 실시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며 시범과정에 발로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해결하고 시범상황을 적시에 피드백하며 분기별로 시범활동의 단계별 총결을 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과정에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경상계정 관리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이상.  별첨 1: 시범방법 원문  별첨 2: 시범방범 별첨 1: 경외구좌 수지정보 보고의정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827135155155. doc  별첨 3: 시법방법 별첨 2: 수출소득 경외예금 수지상황 보고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827135209446. doc  별첨:  **화물무역 수출대금 경외예치 관리**  **시범방법**  **제1조** 경내기업의 자금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를 일층 더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및 기타 외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내기업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배경에서 화물무역 수출대금을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포함, 이하 동일)에 예치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화물무역 수출대금(이하 수출대금이라 함)을 경외에 예치하는 자격조건, 예금규모, 기한 또는 국내반입요구 등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가 수권한 분지기구가 국제 수지정세와 관리수요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조정한다.  **제4조**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하는 경내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수출입규모가 비교적 크고 수출대금 경외예치의 진실성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무상황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최근 2년간에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4) 신용기록이 양호하여야 한다.  (5) 경내기업이 기업그룹인 경우에는 경내에서 자금을 집중 수지하거나 집중 관리한 경험과 여건이 있어야 한다.  (6)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내 기업그룹은 그룹의 본사 또는 1개 계열사를 지정하여 경내계열사들의 주체회사의 자격으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에 참여한 모든 경내회사의 수출대금을 총괄하여 경외에 예치하고 수지할 수 있다.  **제6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내기업이 수출대금 경외예치구좌 개설을 신청하기 전에 경외 구좌개설은행과 경내보고은행을 선정하고 그 은행들과 《구좌수지정보 보고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함. 의정서 서식은 별첨 1 참조)를 체결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인대표나 그 수권인이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서면신청서  (2) 회계감사를 받은 최근 2년간의 회계보고서  (3) 경내기업이 수출대금 경외예치를 위하여 제정한 내부통제제도와 관련 운행규정  (4) 경내기업과 경외은행, 경내보고은행이 체결한 《의정서》  (5) 총괄수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참여한 회사들의 채권채무 및 관련 기장관리방법이나 규정  (6)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수출대금 경외예치업무가 여타 경내기업과 무관하거나 총괄수지를 실시하지만 주체기업과 그 구성회사들이 동일 외환분국 관할에 속하는 경우 경내기업이 소재지 외환분국의 인가를 받은 후 경외에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체기업과 임의의 한개 성원기업이 부동한 외환분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체기업이 국가외환관리국의 인가를 받아야 수출대금 총괄수지를 위한 경외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경내기업은 경외구좌를 개설 후 규정기간 내에 구좌개설은행, 구좌번호, 구좌명칭, 구좌개설은행 소재국가나 지역 등을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경외구좌의 소득범위:  (1) 수출대금  (2) 구좌자금의 이자  (3) 외환국의 인가를 받은 기타소득.  지출범위:  (1) 화물무역계정의 지출  (2) 용역비, 운임 등 무역계정의 비용지출, 경외 도급공사계정의 비용지출  (3) 은행의 일상 관리비용지출  (4) 외환국의 확인을 받았거나 등록한 자본계정의 지출  (5) 경내반입  (6) 외환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지출.  **제8조** 경외구좌의 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에 토대하며 중국 및 구좌개설 소재지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경외구좌의 자금을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서비스무역에 지출하는 경우 경내기업은 주관세무기관이 제시한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체, 부분 자본계정하의 대외지불 세무증명서》를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 경내기업은 규정 서식(별첨 2 참조)에 따라 수출대금 경외예치 경외수지상황을 매월 최소 1회씩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외에 예치한 자금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이 조성된 경우 경내기업은 즉시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내 보고은행은 《의정서》의 약정에 따라 경외 구좌개설은행이 전달하는 경내기업의 경외구좌 수지정보를 즉시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외환국은 경내기업과 경내 보고은행이 보고한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경외구좌수지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외환수속을 하며 필요시에는 경내기업에 관련 증명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외환국은 경외구좌의 수지정보를 국제수지통계 등 외환관리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경내기업은 자기수요에 따라 경외에 예치한 자금을 국내 경상계정 외환구좌로 반입하거나 경외구좌를 말소할 수 있다. 경외구좌를 말소하기 전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내로 반입하여야 한다. 경내기업이 경외구좌를 말소한 후에는 규정기간 내에 경외구좌 말소통지서를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외구좌에 예치한 수출대금에 대한 총괄수지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그룹은 이에 참여한 계열사의 채권채무관리와 관련 회계 기장작업을 잘하고 각 계열사의 채권채무 상황과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경외에 예치한 수출대금을 경내로 반입하는 경우 각 계열사의 잔고를 따로 경내 경상계정 외환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 경내기업은 수출대금 경외예치 내부통제제도와 내부운행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구좌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내기업은 경외구좌의 수지와 관련한 계약서, 증빙 등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5조** 외환국은 경내기업의 수출대금 경외예치업무에 대한 원격감시를 실시하고 이상한 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내기업에 하기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외환국의 인가 없이 제멋대로 경외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경우  (2)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경외구좌 개설을 신청한 경우  (3)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외구좌를 개설한 경우  (4)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외구좌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외구좌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6)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7조** 경내기업에 이 방법 제16조 제(1), (2), (3)호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국은 기한부 경외구좌말소를 명하고 구좌의 잔고를 경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경외구좌 개설은행이 《의정서》에서 약정한 대로 관련정보를 경내보고은행을 통하여 외환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외환국은 경내기업에 당해 은행에 개설한 구좌를 말소하고 구좌의 잔고를 경내에 반입도록 하거나 당해 구좌의 자금을 여타 지정은행에 이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경내보고은행이 이 방법의 규정과 《의정서》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개인이나 보세감독관리구역 내의 기업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이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관련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部分地区开展出口收入存放境外政策**  **试点的通知**  国家外汇管理局，2010年8月27日  为提高境内企业资金使用效率，进一步促进贸易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的有关规定，国家外汇管理局决定自2010年10月1日起，在北京、广东（含深圳）、山东（含青岛）、江苏四个地区开展出口收入存放境外政策试点，试点期限一年。现就试点有关要求通知如下：  一、试点地区有出口收入存放境外意愿且符合规定条件的境内企业，可向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申请，经批准后参加试点。  二、试点地区国家外汇管理局分局、外汇管理部（以下简称试点分局）应按《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试点办法》（以下简称《试点办法》，见附件）相关规定审核申请企业资格，并根据当地实际和辖内企业申请情况，分期分批确定试点企业名单。试点期间每个试点分局核定的试点企业总量不超过10家。  三、试点企业应当按照《试点办法》的相关规定办理境外账户的开立、关闭以及资金收付等业务，并向外汇局报送相关信息。  四、外汇局应按《试点办法》相关规定对试点企业境外账户收支实施管理，并按企业主体建立业务台账。  五、试点企业存放境外出口收入的年度总额不得超过其上年度出口收入总额的一定比例。该比例由试点分局按照《试点办法》相关规定，根据企业实际情况确定和调整。  六、外汇局根据试点企业报告信息，为试点企业办理出口收汇核销、进口付汇核销（或进口付汇总量核查）等相关外汇管理手续。试点企业完成出口收汇核销后，按规定正常办理出口退税。  七、试点分局应根据《试点办法》和本通知的相关规定制定本地区的试点操作规程，明确业务操作要求。试点操作规程应于2010年9月20日前上报总局备案后实施。  八、试点分局应加强对出口收入存放境外试点工作的组织领导，成立以分管副局长为组长的试点工作小组，根据总局的统一部署，制定具体的试点工作方案，认真组织实施。  九、试点分局应做好对辖内分支机构与试点企业的业务培训，加强政策宣传，认真研究解决试点中发现的问题，及时反馈试点情况，并按季向总局上报试点工作阶段性总结。  执行中如遇问题，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经常项目管理司反馈。  特此通知。  附件一：试点办法-正文  附件二：试点办法-附件1：境外账户收支信息报送协议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827135155155.doc>  附件三：试点办法-附件2：出口收入存放境外收支情况报告表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827135209446.doc>  附件：  **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管理**  **试点办法**   1. 为提高境内企业的资金使用效率，进一步促进贸易便利化，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其它相关外汇管理规定，制定本办法。 2. 境内企业将具有真实、合法交易背景的货物贸易出口收入存放境外（含港澳台地区，下同），应当遵守本办法规定。 3. 货物贸易出口收入（以下简称出口收入）存放境外的资格条件、存放规模、期限或调回要求等由国家外汇管理局或其授权分支机构根据国际收支形势和管理需要确定和调整。 4. 境内企业将出口收入存放境外应当具备下列条件：   （一）进出口规模较大，具有出口收入存放境外的真实需求；  （二）财务状况良好；  （三）近两年内无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  （四）诚信记录良好；  （五）境内企业为企业集团的，应在境内有资金集中收付或集中管理的经验和条件；  （六）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规定的其他条件。   1. 符合规定条件的境内企业集团可由集团总部或指定一家参与的境内成员公司作为主办企业，由其负责按照本办法规定，对所有参与的境内成员公司存放境外的出口收入实行集中收付。 2. 符合规定条件的境内企业申请开立用于存放出口收入的境外账户前，应当选定境外开户行和境内报告行，与其签订《账户收支信息报送协议》（以下简称《协议》，协议模板详见附件1），并向所在地外汇局提供下列材料：   （一）法人代表或其授权人签署并加盖公章的书面申请；  （二）经审计的近两个年度财务报告；  （三）境内企业为实施出口收入存放境外运作而制定的内控制度和相关内部操作规程；  （四）境内企业与境外开户行、境内报告行签订的《协议》；  （五）实行集中收付的，还须提交关于参与的成员公司债权债务及相应会计记账管理办法或规章；   1. 外汇局要求的其他材料。   对于出口收入存放境外业务不涉及其他境内关联企业，或实行集中收付但主办企业与其他参与的成员公司属同一外汇分局管辖的，经所在地外汇分局批准后，境内企业可开立境外账户。对主办企业与任意一家成员公司属不同外汇分局管辖的，经国家外汇管理局批准后，主办企业方可开立用于出口收入集中收付的境外账户。  境内企业应在开户后规定期限内将开户行、账号、户名、开户行所在国家和地区等报所在地外汇局备案。   1. 境外账户的收入范围包括：   （一）出口收入；  （二）账户资金孳息；  （三）经外汇局批准的其他收入。  支出范围包括：  （一）货物贸易项下支出；  （二）佣金、运保费等贸易从属费用支出、境外承包工程项下费用支出；  （三）银行日常管理费用支出；  （四）经外汇局核准或登记的资本项目支出；  （五）调回境内；  （六）符合外汇局规定的其他支出。   1. 境外账户的收支应当具有真实、合法的交易基础，符合中国及开户行所在国家和地区相关法律规定。   境外账户资金用于按规定应申报纳税的服务贸易支出的，境内企业应当留存主管税务机关出具的《服务贸易、收益、经常转移和部分资本项目对外支付税务证明》备查。   1. 境内企业应当按照规定格式（详见附件2），向所在地外汇局如实报告出口收入存放境外收支情况，每个月至少报告一次。   存放境外资金运用出现重大损失的，境内企业应当及时报告所在地外汇局。   1. 境内报告行应当按照《协议》约定，及时将境外开户行递交的境内企业境外账户收支信息报送所在地外汇局。 2. 外汇局根据境内企业和境内报告行报告的相关信息，对境外账户收支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并履行相关外汇管理手续，必要时可以要求境内企业补充相关证明材料。外汇局可将境外账户收支信息用于国际收支统计等外汇管理相关用途。 3. 境内企业可以根据自身经营需要将存放境外资金调回境内经常项目外汇账户或关闭境外账户。境外账户关闭前留有余额的，应当调回境内。境内企业关闭境外账户后，应当在规定期限内持境外开户行的销户通知书向所在地外汇局备案。 4. 境内企业集团对存放境外出口收入实行集中收付的，应当做好参与的成员公司债权债务的管理及相应的会计记账工作，清晰区分各参与的成员公司的债权债务状况及金额。   存放境外出口收入调回境内的，应按照成员公司各自存余金额相应划入成员公司的境内经常项目外汇账户。   1. 境内企业应当根据出口收入存放境外的内控制度和相关内部操作规程，加强境外账户资金管理。   境内企业应当保留与境外账户收支相关的交易合同、凭证等文件资料五年备查。   1. 外汇局对境内企业出口收入存放境外业务进行非现场监测，可对异常情况实施现场核查。 2. 境内企业存在下列行为的，外汇局按《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相关规定予以处罚：   （一）未经外汇局批准，擅自在境外开户存放资金的；  （二）提供虚假材料申请开立境外账户的；  （三）违反本办法规定使用境外账户的；  （四）未按规定报送境外账户相关报告或备案信息和材料的；  （五）未按规定关闭境外账户的；  （六）违反本办法规定的其他行  为。   1. 境内企业存在本办法第十六条第（一）、（二）、（三）项规定行为的，外汇局可责令其限期关闭境外账户，并调回账户资金余额。   境外开户行未按《协议》约定，通过境内报告行向外汇局报送信息的，外汇局可要求境内企业关闭在该行开立的账户、调回账户资金余额或将账户资金划转到他行指定账户。   1. 境内报告行未按照本办法规定和《协议》约定报送有关数据信息的，外汇局按《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相关规定予以处罚。 2. 具有对外贸易经营权的个人与保税监管区域内企业不适用本办法。 3. 本办法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4. 本办法自2010年10月1日开始施行。以前有关规定与本办法相抵触的，按本办法执行。 |